

보도시점 2024. 12. 24.(화) 배포 즉시 배포 2024. 12. 24.(화)

“소송 대신 조정”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 특허청·대전지법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 소송보다 조정으로 신속해결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덕)은 12. 24.(화)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법원-조정 연계제도’ 대전지법으로 확대, 분쟁 신속 해결 발판 마련>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16년 특허권등 소송의 관할집중 시행으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신품종보호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지방법원으로 집중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최근 5년간 신청 건수 3배 증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0%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145건으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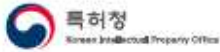
*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확대 방안 관련 붙임3 참고

※ 붙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2. 법원-조정 연계제도 처리 절차
3.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 방안
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행사 종료 후 사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임준영 (042-481-8227)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란?

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 신청 분야

- | | | | |
|----------------------------|---------------|---------------|-----------------|
| 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 직무발명
관련 분쟁 | 영업비밀
관련 분쟁 |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
|----------------------------|---------------|---------------|-----------------|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

- | | | | |
|----------------------|------------------|-------------------|---------------------|
| 신속한 분쟁해결
(3개월 이내) |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 | 절차 비공개
(비밀 보장) | 전문가의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
|----------------------|------------------|-------------------|---------------------|

❧ 신청 자격

- | | | | |
|----------------------|-------------------|-------------------|--------------------|
|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사용권자 | 직무발명자
영업비밀 보유자 |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 | 권리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kopia.re.kr/adr
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T1670-9779 F 02-553-5885 E-mail ip.adr@koreakr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



① 조정 회부(대전지법)

-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조정 회부 결정

② 조정사건 연계(대전지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건 특성 및 당사자를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
- 대전지방법원에서 분쟁 당사자 간 제출자료 및 사건 기록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로 송부

③ 조정 진행(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사건을 접수하고, 조정위원 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3인 이내 조정부를 구성
- 조정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조정결과 송부

④ 조정사건 종료(대전지방법원)

- (합의 성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후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합의 불성립) 소송 절차 진행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4.12.12.)]

【 기본 방향 】

- ◆ 민사본안 관할집중을 특허법 등에서 기술안보 법률로 확대
- ◆ 지식재산 형사, 민사가처분 및 행정 소송 관할집중 신규 도입
- ◆ 지식재산 주요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 전속관할 체계 완성
-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 강화

〈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 前 · 後 비교 〉

구분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심결 취소 소송	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민 형 사 및 가 처 분 소 송	5개 지재법 민사본안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 +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지재법 가처분·형사, 기술안보지재법 민사본안 지법(18개소), 지원(42개소)	특허법원 + 고등법원 (6개소) + 지법 합의부	대 법 원	중 복 관 할 (③) 서울 중앙지법 + 대전지법	특허 법원 대전본원 + 서울재판부	대 법 원
행 정 소 송	무역위 + 특허청 (②)	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서울고법 + 대전고법	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 ① [5개 지식재산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기술안보 지식재산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 ②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법, [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 ③ [민사 본안·가처분]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형사] 지법(18개소) 및 지원(42개소)

〈 특허법원 담당 관할 변화 〉

구 분	현 행	개 선
지식재산 침해 관련 법률	5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9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 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 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불공정무역조사법
지식재산 소송	심결취소, 민사본안	심결취소, 민사본안, 형사, 민사가처분, 행정

붙임 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및 성립률

(단위 : 건)

구 분		'19	'20	'21	'22	'23	'24.11.	합계
신청건수	전체	45	70	83	76	159	145	578
	법원연계	-	-	-	-	107	112	219
성립률		66%	59%	73%	64%	51%	67%	62%

□ 신청·피신청인 형태별 조정 현황('19~'24.11.)

(단위 : 건)

신청인 \ 피신청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비율	성립률
신청	대기업	4	1	3	2	-	10	1.7%	43%
	중견기업	-	-	7	-	-	7	1.2%	83%
	중소기업	13	12	412	26	10	473	81.8%	61%
	개인	12	5	22	4	5	48	8.3%	50%
	기타	1	-	39	-	-	40	6.9%	86%
합계		30	18	483	32	15	578	100%	62%
비율		5.2%	3.1%	83.6%	5.5%	2.6%	100%		
성립률		33%	46%	66%	60%	20%	62%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황('19~'24.11.)

정부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영업비밀·무정경쟁)	직무발명	계
		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1명	18명	10명	7명	6명	5명	27명	5명	79명